

[서식 예] 경계침범죄

고 소 장

고 소 인 O O (주민등록번호 111111-1111111) OO시 OO구 OO길 OO번지(전화번호 010-0000-0000)

피고소인 △ △ (주민등록번호 111111-1111111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(전화번호 010-0000-0000)

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경계침범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고소인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, 피고소인은 위 같은 길 ○○의 소유자로서 위 고소인 주택과 경계를 접하며 거주하고 자입니다.
- 2. 그런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소유 주택사이에 놓여있는 경계의 일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으면서 상호간에 오래 전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경계로 설정하기로 하고 수년동안 평온하게 거주하여 왔으나, 피고소인은 그 소유 주택을 신축하여 오던 중 20○○년 ○월 ○일에 이르러 피고소인의 통행에 편의를 위하여 고소인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양 토지상에 경계의 표시로 식재된 수목 5그루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 인식을 불능케 하고, 고소인 소유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벽돌 담장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.



3.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일부토지에 설치된 경계를 임의로 제거하고 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

1. 지적도 1통

1. 사진 각 3부

그 밖의 필요한 것은 추후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.

2000년 0월 0일

고 소 인 〇 〇 (인)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5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런법규	형법 370조
범죄성립 요 건	경계표를 손괴,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때		
형 량	· 3년 이하의 징역 · 500만원 이하의 벌금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(항고)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제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제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